

# 民主化에 對한 우리의 視覺

— 建設技術管理法案은 廢棄되어야 한다 —

本協 서울特別市 支部長  
俞景哲

지금 國會에 상정되어 있는 建設技術管理法案은 「6·29선언」 이후의 전국민의 뜻인 社會의 민주화 그리고 自律化 흐름에 역행하고 民族文化發展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이 原案대로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亂麻로 얽혀 있는 건설관련 法體系와 행정은 더욱 혼란상태에 빠져들 것이고 이 법이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건설기술의 水準向上과 建設工事의 適正施工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建築士들에게 있어서는 建築設計作業의 필요불가결한 과정인 工事監理를 단절시킴으로써 建築士의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은 안일한 行政便宜主義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분석을 거치지 않고 皮相의인 觀察과 即興的 兇想으로 問題해결을 추구하는 硬直된 관료적 자세의 産物이다. 이 法의 출현경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法은 昨年에 불이나버린 獨立紀念館의 잿더미 속에서 잉태되었다. 독립기념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한 電氣技術者의 잘못때문인가 하더라도 그 근본원인은 拙速한 事業推進方式, 無理한 工期, 非合理的인 下都給制度, 不分明한 공사수주 過程등 社會全体가 또는 建設業界의 構造的 모순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대저 전체를 보기 두려워하는 자는 부분만을 몰고 늘어진다. 정부는 구조적 實相을 덮어버리는 수단으로

기술적 측면인 건설공사의 불합리를 내세웠다. 짧은 기간내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제출을 宿題로 부여받은 관료들은 별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생색은 쉽게 나는 처방을 내렸다. 새로운 法과 새로운 機構가 그것이다. 정부의 技術審議를 거치면 설계가 완전해질 것이고 (案5조, 案23조) 技術人力을 정부시책으로 관리하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案6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建設技術용역의 수준을 높힐 수 있다. (案20조) 또 정부가 品質試驗을 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案24조) 정부에 등록된 대형감리전문회사가 監理를 하면 공사의 품질이 보장되며 (案27조) 政府가 설계 및 施工基準을 정하면 건설기술이 향상되고 先進化된 공사관리가 이루어진다 (案34조) 이런식의 安易한 兇想法은 경직된 관료기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作態이다. “웃분”뜻을 그럴 듯하게 호도할 수만 있다면 결과가 藥이 될지 毒이 될지는 상관할 바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그럴듯한 감언과 억지로 어지러운 때를 노리고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者때문에 일이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병을 고치는데 허둥지둥대며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는 의사는 환자를 만신창이로 만든다. 사회의 전반적 풍토가 專門家의 判斷보다는 非專門家인 소위 “웃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技術審議委員會”의 設計審議나 “監理專門會社”의 監理監督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審議과정 (무수한 審議委員會들이 있다)과 認許可節次만으로도 建築士나 技術者들이 관청을 쫓아 다니기 바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다 빼앗기니, 어떻게 좋은 작품과 기술개발, 품질 향상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복잡한 認許可節次와 심의절차를 과감히 간소화시킨다면 건축사, 기술자 등 여러 專門人들이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 法은 建築設計와 建設技術用役의 本質的 差異를 간과하고 있다. 建設技術用役이 經濟活動의 性格이 강한 반면 建築設計는 文化活動的 性格이 강하다. 建築設計는 한 나라의 文化的 性格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建築士를 다른 建設技術者와 다르게 취급을 하며 一般 建設法令과는 別個의 다른 法體系下에서 設計行爲를 하도록 배려를 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건축활동의 수준은 그 량에 있어서나 그 質에 있어서나 선진국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그 원인은 日帝식민지강점과 해방후 혼란, 6·25전쟁 등으로 건축가라는 전문 분야가 제대로 뿌리를 못내렸기 때문이다. 건축사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말이었고 당시 建築士의 숫자는 불과 몇십명에 불과하였다. 설계다운 설계가 발주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건축설계 일의 대부분은 관청 허가

“

이 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의 轉換期的 狀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는 建築設計를 建設技術用役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案2조) 뒤에 가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였다. (案40조) 이 혼동은 두가지 잘못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建築工事監理가 建築設計의 必須的인 過程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업무였으며 설계사무소종사자들에게 建築士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그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 1963년 말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상당수는 書類銓衡등으로 면허를 받았다. 그후 7년이란 응시자격 연수를 5년으로 선심쓰듯하면서 기술사(7년)의 하위에 위치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특별전형의 본 취지를 이탈하여 공무원에 편중하는 듯한 오해와 회원간 불협화의 소지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가피했던 歷史的 經過 또는 一時的 現象 때문에 건축사의 본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해서 안된다. 다른 나라에서 몇백년간에 걸쳐 다듬어 진 건축활동의 세련성이 어찌 30년도 안되는 기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建築士法과 行政, 제도, 기구를 수백번 바꿔본 들, 소용이 없다. 그 바탕이 형성되고 자질을 갖춘 建築士의 숫자가 늘어나면 건축설계 본연의 創造的 기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의 轉換期的 狀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는 建築設計를 建設技術用役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案2조) 뒤에 가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였다. (案40조) 이 혼동은 두가지 잘못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建築工事監理가 建築設計의 必須的인 過程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王宮을 짓거나 뒷간을 짓거나간에 상황변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것이 집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종류의 상황변화기간에 가장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설계를 맡았던 建築士이다. 흔히 비유되듯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같이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을 조정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建築士만이 그 建築物에 관한 가장 폭넓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전문기술자보다도 시행착오를 저지를 확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사에게 工事監理者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美國 建築家協會(AIA)가 발간한 指針書에는 “工事監理”란 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말로 工事段階에서의 건축사의 업무. (Basic Service Consturction Phase)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공사감리라고 부르는 과정은 建築士의 고유한 業務 (Basic Service)에 속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그러니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설계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가. 둘째는 용어를 잘못 선택하였다. 이 법에서 定義하고 있는 “施工監理”란 개념은 法の 전체문맥으로 보아 施工管理(Construction Management)에 해당한다. (Supervision은 공사감리가 아니다.) 工事監理(Inspection)란 용어가 建築法과 建築士法에서 이미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널리 通用되고 있는 마당에 질적으로 별개의 개념인 施工管理를 接頭語만 바꿔 끼워 施工監理란 용어로 부르게 되니

혼동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孔子가 이름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正名)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수천년전에 말한 바 있듯이 施工監理 대신에 施工管理(Construction Management)란 이름을 붙였으면 案40조와 같은 엉뚱한 條文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이 법은 民族文化 보호자로서의 정부역할이 倒置되어 있다. 이 법은 建設技術用役業의 合作投資를 장려함으로써 (案22조) 국내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語不成說이다. 마치 양담배를 수입함으로써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외국에서 技術用役市場을 개발하도록 압력이 들어와도 이를 막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외국용역업체보고 국내에 들어오시라고 나서는 것은 이 提案者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건축물의 설계나 대형 건설사업의 技術用役이 외국업체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국내 建築士나 技術者는 一個 심부름꾼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 판국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장려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 따름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 法案은 시대의 흐름에 逆行하는 官主導, 行政便宜主義, 屋上屋의 節次, 為人設官, 論理의 취약, 예상되는 副作用, 비능률, 民族利益의 훼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全面 廢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 9. 26